

나.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심의 (제19조제4항)

- 1) 공사 발주시 표준작업량, 작업가능일 등에 대한 고려없이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부족한 공기로 인한 품질·안전 문제가 있었으며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12., 45회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에 따라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 추진
 - 2)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
 - 3)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전문가가 심의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관리 내실화 (제45조제1항)

- 1)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14.5월~) 하고 있으나, 하도급 신고 및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도급만 수행하는 경향이 고착화
- 2)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명확히 하여 하도급 실적 관리를 내실화
- 3) 하도급 실적 관리가 내실화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수주하는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의 건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7, FAX 044-201-5551, 메일 msbbond@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세종이엔씨(민경남), ② (주)다우컨설팅트(연제문),
③ 금호산업(주)(서재환), ④ 대전도시공사(유영균)

나. 전화번호 : ① 042-719-8860, ② 042-520-2352, ③ 02-6303-0734, ④ 042-530-9342

2. 명칭 : 경량 패널을 이용한 원지반 부착방식의 절토부 옹벽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토질 및 기초/사면 관리 및 보강, 토목/토질 및 기초/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Top-Down 시공에 의해 원지반을 수직굴착한 후 경량화된 패널 사용과 시멘트 몰탈 충전을 통해 원지반 부착방식의 패널 설치가 가능한 절토부 옹벽으로 기초블록 및 배면 뒤채움이 불필요하여 공정이 간소화되고 시공중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향상시킨 공법이다.

<범위>

절토비탈면에서 Top-Down 시공에 의해 원지반을 수직굴착하고 원지반 부착이 가능하도록 경량화시킨 프리캐스트 패널과 시멘트 몰탈 충전방식으로 원지반과 패널이 일체화 되는 원지반 부착방식의 절토부 옹벽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대한제22호평택고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전태경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소재 건축예정인 공동주택 총 1,32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월 3일

●병무청공고제2019-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월 8일

병 무 청 장